

양주시시설관리공단 성과평가운영규정

제정 2008. 4. 8 규정 제 29호
개정 2009. 6. 17 규정 제 53호
개정 2010. 4. 20 규정 제 67호
일부개정 2019. 4. 16 규정 제180호
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21. 7. 12 규정 제212호
(양주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양주시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의 각 부서별·개인별 업무추진실적 평가를 통하여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내부평가에 관하여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평가위원회) ① 업무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두며, 평가위원회는 4인 이상 7인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9. 4. 16>

②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09. 6. 17, 2010. 4. 20, 2019. 4. 16>

[제목개정 2019. 4. 16]

제4조(평가위원회 임무 및 운영) ① 평가위원회는 성과평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 <개정 2019. 4. 16>

1. 업무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 확정
2. 삭제 <2019. 4. 16>
3. 삭제 <2019. 4. 16>
4. 기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평가위원회는 성과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이사장이 소집하며, 의결할 사항

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. <개정 2019. 4. 16>

[제목개정 2019. 4. 16]

제5조(실무위원회 구성) ① 이사장은 평가위원회와는 별도로 성과평가의 시행과 개선, 평가급 산정방법 결정을 위하여 성과평가 실무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4. 16, 2021. 7. 12>

② 실무위원회에서는 각 부서의 현안사항과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자를 위원으로 임명한다. <개정 2009. 6. 17, 2010. 4. 20, 2019. 4. 16>

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한다. <개정 2019. 4. 16>

1. 부서별, 개인별 성과평가 편람 및 목표관리에 관한 사항
2. 팀별, 개인별 평가대상에 대한 가중치 및 목표치 구성
3. 평가결과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개선책 마련
4. 공단직원들의 평가급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
5. 기타 성과평가와 관련된 사항

[중전 제7조에서 이동 2019. 4. 16]

제6조(사업목표설정) ① 이사장은 각 사업별로 당해연도의 사업목표를 부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4. 16>

② 사업목표가 사업의 인수·폐지·기타 여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각 팀장은 실무위원회를 통해 사업목표 조정안건을 부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4. 16>

③ 실무위원회에서 사업목표 조정 확정시에는 해당 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4. 16>

[중전 제5조에서 이동 2019. 4. 16]

제7조(경영실적보고) ① 각 팀장은 매분기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15일 이내 전략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4. 16, 2021. 7. 12>

② 전략기획팀장은 각 팀장이 제출한 사업실적 보고서를 취합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4. 16, 2021. 7. 12>

[전문개정 2010. 4. 20]

[중전 제6조에서 이동 2019. 4. 16]

제8조(평가실시) ① 이사장은 자체 성과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9. 4. 16>

②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 소속 위원은 【별지 제1호 서식】의 서약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4. 16>

③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준, 방법 등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9. 4. 16>

제9조(평가결과 반영) ① 위원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팀별·개인별 순위 결정 및 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

②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 및 개인에 대하여는 인사고과에 반영하고, 평가급 지급율 반영, 포상금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, 부진 사업 및 개인에 대하여는 시정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4. 16>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규정 제53호, 2009. 6. 17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규정 제67호, 2010. 4. 20>

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규정 제180호, 2019. 4. 16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규정 제212호, 2021. 7. 12,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성과평가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 중 “성과급”을 “평가급”으로 하고, 제7조제1항및제2항 중 “기획감사팀장”을 “전략기획팀장”으로 한다.

⑤ 부터 ⑪ 까지 생략

[별지 제1호 서식] <개정 2019. 4. 16>

서약서(제8조제2항관련)

본인은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과 위반 시에는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.

1. 평가는 반드시 위원장의 지시와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할 것이며, 개별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.
2. 성과평가 중 취득한 비밀은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.

20 년 월 일

서약자 소 속 :

직 위 :
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

